

Young Engineers Honor Society(YEHS)

정 관

2010. 12. 28.



**Young Engineers Honor Society (YEHS),
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NAEK)**

제 1 장 총 칙 (總 則)

제 1 조 (명 칭) ① 본 모임의 정식 명칭은 ‘Young Engineers Honor Society’ (이하 ‘YEHS’)으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한국공학한림원 차세대 리더’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 2 조 (모임의 목적) ① YEHS는 전국 공학도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국적인 공대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② YEHS는 회원들에게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학적 배경을 가진 리더를 양성한다.

③ YEHS는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YEHS의 모든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2 장 회 원 (會 員)

제 3 조 (조 직) ① Young Engineers Honor Society(이하 “YEHS”)는 YEHS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회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회원 규정 관련 부칙을 따른다.

제 3 장 임 원

제 4 조 (임 원) YEHS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회장 1인, 부회장 3인

- 부장, 차장 및 부원은 부서별 특성과 업무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 부장 이상의 임원은 CEO 포럼 참석이후 1년 이상인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임명된다. 단, 회장, 부회장직 한해, 6개월 이상 임원직을 역임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한 정회원만이 해당 직책에 임명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②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직급은 6개월에 1회씩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 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YEHS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7 조 (회장 및 부회장) ① 회장 및 부회장은 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임명된다.

- ② 회장은 YEHS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차장과 공조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가 YEHS의 목적에 맞도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
- ④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6조 1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⑤ 회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부회장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지목한자가 다음 총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부장 및 차장) ① 부장 및 차장은 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임명된다.

- ② 부장은 담당하고 있는 관리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차장은 부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 ④ 부장과 차장의 임기는 6조 1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⑤ 부장과 차장의 임기는 정회원의 자격기한에 우선한다.
- ⑥ 부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차장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지목한 자가 다음 총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부원 혹은 정회원을 지목하여 잔여 임기 내에 해당 직무를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상임위원회) ①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YEHS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위원은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 중 1년 이상 회장 및 부회장직을 역임했거나 운영진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임위원회가 공로를 인정하여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상임위원직을 맡을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0 조 (총회의 기능) ①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 회원은 총회에서의 발권을 가지며 정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1. 회원의 선출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부회장의 임명 및 해임 결정에 관한 사항
3. 추천된 임원 후보의 임명 결정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1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12월),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청 또는 정회원 2/1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개최 일주일전에 공식적인 경로(홈페이지 또는 각 회원에게 통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2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20명 또는 정회원 재적수의 2/10 중에서 최대 정회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또는 승인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신임 임원 선출 및 정관의 개정에 한해서는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또는 승인한다. 2/3 미만일 경우에는 신임 임원 또는 정관 개정을 거부한다.

제 13 조 (총회결의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본인에 관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안
 2. 기타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결
- 단, 위의 2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진행으로 총회의 동의를 구해 해당 회원의 의결 참여를 허락할 수 있다.

제 14 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과 출석 정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5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제4조의 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이 운영위원회장이 된다.

제 16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차기 임원 후보의 추천에 관련된 사항
5.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YEHS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7 조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특별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연 6회(1월, 2월, 5월, 7월, 8월 11월), 특별운영위원회는 전체 임원의 과반수가 요청할 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 18 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전체 임원의 1/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장이 결정한다.

제 19 조 (운영위원회결의의 제척사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본인에 관한 임원의 추천 및 해임건의 사안
 2. 기타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결
- 단, 위의 2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진행으로 총회의 동의를 구해 해당 회원의 의결 참여를 허락할 수 있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장 및 운영위원회장이 지명하는 출석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고 그 내용을 모든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관 리 부 서

제 21 조 (부서) 회장단 아래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는 아래 6개 관리부서를 둔다.

1. 행사기획 1부는 주니어공학기술교실 및 산업체 방문을 총괄한다.
2. 행사기획 2부는 고교방문전공설명회 및 리더십 강좌를 총괄한다. 행사기획 1부와 2부는 업무 분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협업한다.
3. 회원관리부는 YEHS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관리위원회에 규정에 따른 회원등급 조정대상 명단을 보고한다.
4. Web홍보부는 YEHS의 대내외적 홍보와 회보 관리, 홈페이지 관리 및 커뮤니티를 관리한다.
5. 학술교류부는 YEHS세미나를 총괄한다.
6. 소모임관리부는 YEHS 내의 자생적 소모임을 총괄 관리한다.

제 22 조 (부장, 차장 및 부원) ①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의 수는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게 유동적이거나 최대 2인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부장 및 차장의 선발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제5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임명한다. 부장 및 차장의 임기는 제6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 및 정회원 중에서 각 부의 부원을 필요한 수만큼 임명할 수 있다. 부원은 임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회 계

제 23 조 (재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YEHS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각 회원의 행사참가회비
2. 지원금 및 찬조금
3.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수익 및 손해
4. 기타 일반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재산

② YEHS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재산으로 충당한다.

제 24 조 (회비) ①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필요시 행사 참가에 따라 납부하

는 행사참가회비이다.

- ② 행사참가회비의 납부대상은 해당 행사에 참가신청을 하는 회원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의 액수, 납부기한, 납부방식 등 회비의 수납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 ④ 행사참가회비의 액수가 해당 행사의 실제 경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거나 실제 경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부분을 일반재산으로부터 환급할 의무를 지닌다.

제 25 조 (재정의 관리) ① 총무직은 회장이 담당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다른 임원이 해당직을 대행할 수 있다.

- ② YEHS의 재산의 관리 및 회계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의를 통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총무직이 담당한다. 재산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회장이 맡는다.

제 26 조 (회계) ① 총무직은 재산상태 및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업무를 수행한다.

- ② YEHS의 회계연도는 매해 마지막 정기총회일(12월) 다음날로부터 차년도 마지막 정기총회일(12월)까지로 한다.
- ③ 해당 회계연도에 흑자 예산의 잉여분 또는 적자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 9 장 보 칙

제 27 조 (발효 및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시점부터 발효, 시행된다.

제 28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임원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29 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
- 2. 회원총수 및 출석회원 명부
- 3. 회의 내용
- 4. 의결사항 및 찬부여부

제 30 조 (운영세칙) YEHS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會員) 규정 관련 부칙

제 1 조(회원의 자격) ① 대한민국 공과대학 학부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또는 석사 과정에 있는 자를 기본 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의 자격을 충족시킨 박사과정 진학자는 본인이 원하면 회원 자격을 갖는다.

③ 대한민국 각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얻어 한국 공학한림원의 CEO 포럼에 참석한 자에서 회원을 선발하며, 선발된 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④ 정회원은 준회원 중에서 제 2조(정회원의 자격) 규정에 따라 선발 한다.

제 2 조(정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학부생, 대학원생 구분 없이 세미나 1회, 공식대외 행사 1회 이상 참여

- 위에서 언급한 공식대외 행사는, YEHS와 한국공학한림원이 함께 운영하는 주니어 공학기술교실, 리더십 강좌, CEO 초청강연, 산업체방문, 고교방문전공설명회 등을 의미하며,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제공하는 CEO 포럼, 한경토론마당 등의 행사는 제외한다.

- 위에 언급된 사항은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② (2009년 8월까지의 CEO 포럼 초청자)정회원 심사는 가입 일을 기준으로 2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총 4회 이루어지며 제2조 1항에 명시된 조건을 2회 연속 충족해야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③ (2009년 8월 이후의 CEO 포럼 초청자)정회원 심사는 가입 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총 3회 이루어지며 제2조 1항에 명시된 조건을 2회 연속 충족해야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④ 1항에 명시된 조건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⑤ 정회원 자격의 취득자는 제 4 조(회원의 제명)에 해당 되지 않으면 그 자격은 영구하다.

제 3 조(회원의 권한 및 의무) ① 정회원은 YEHS에서 주최하는 모든 공식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그리고 부회장 이상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정회원 자격 취득자에게는 활동을 인정하는 인정서를 발급한다.

④ YEHSSenior에 속하기 위한 최소 요건은 YEHS에서 정회원 이상의 활동도를 보인 회원으로 제한한다.(확정된 요건은 YEHSSenior 정관 완성 후 회원들에게 기재한다)

⑤ 준회원은 YEHS 공식행사의 참여권한과,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권 및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한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⑤ 모든 회원은 공식 행사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회원관리위원회에서는 행사 참여가 저조한 회원에 대해 제 8 조 에 따라 정회원 자격 박탈 또는 제명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 4 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관리위원회에서는 회원에 따라 기본적인 활동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회원관리위원회에서는 CEO 포럼 참석이후 2년간 정회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원은 제명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구제방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YEHS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YEHS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 5 조(회원관리위원회 등) ① 정회원의 자격요건이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회원관리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정기총회 시 변경사항을 회원들에게 승인 받는다.

② 1항의 회원관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관리부를 중심으로 한 회원관리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회원관리위원회는 매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소집되며,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회장 또는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부회장의 소집에 따라 운영 된다.

제 6 조(회원 관리 규정의 변경) 위의 회원 관리 규정과 관련된 부칙은 YEHS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 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기 총회 혹은 기타의결방법을 통해 승인 받을 수 있다.